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93

발의연월일: 2021. 5. 26.

발 의 자:이달곤·김예지·조수진

이종배 • 이주환 • 서일준

김태호 · 김승수 · 성일종

전주혜 • 이채익 • 윤한홍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나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역시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2021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4조제1항).
- 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장함(안 제66조).
- 다.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함(안 제67조제1항·제2항).
- 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68조).
-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9조제1항).
- 바. 농ㆍ어업 경영 및 농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 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 아. 농·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제3호·제3호의2).
-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 차.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 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25제7항·제8 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다.

제67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제3호"를 "제2호"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3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 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	대한 세액감면)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	
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	
면한다.	
1.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산	1. <u>2026년 12월 31일</u>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	
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	
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	법인세의 면제 등) ①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	
다)에 대해서는 <u>2021년 12월 3</u>	<u>2026년 12월 3</u>

<u>1일</u> 이전이	게 끝나는 고	斗세연도까
지 곡물 등	및 기타 식탁	당작물재배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	재배업소득'	'이라 한
다) 전액	과 식량작들	물재배업소
득 외의 결	소득 중 대통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의 금액	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 이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 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

<u>1일</u>
②
<u>2026년</u>
12월 31일
③
<u>202</u>

<u>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u> 6년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 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 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 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 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

<u>6년 12월 31일</u>
4
<u>2026년 12월 31일</u>
,

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 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 ⑥ (생략)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 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 용받을 수 있다.

⑧ ~ ⑩ (생 략)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저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⑤・⑥ (현행과 같음)
⑦
<u>2026년 12월 31일</u>
⑧ ~ ⑩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Ⅱ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⑧ ~ ⑩ (현행과 같음)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 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u>2021년</u>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 ⑥ (생 략)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 전 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u>20</u>
26년 12월 31일
②
<u>2026년</u>
12월 31일
<u>.</u>
③ ~ ⑥ (현행과 같음)
세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
인세의 면제 등) ①
<u>2026년 12월 3</u>
1일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까지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서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 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 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 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 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②
<u>2026년 12월 31일</u>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 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 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overline{3}$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2026년 12월 31일----농업회사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 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 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 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4)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

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 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 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 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 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 ⑥ (생 략)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지 등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u>2026년 12월 31일</u>
i
⑤・⑥ (현행과 같음)
세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감면) ①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 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 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2026년 12월 31일--②·③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2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2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

- 1. ~ 12. (생 략)
- ② ~ ⑤ (생 략)
-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저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u> </u>
<u>202</u>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3호
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
한 것에만 적용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ll 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 1. 2. (생략)
- ② ~ ② (생 략)
-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략)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2. (생략)
 -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
 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

<신 설>

<u>2026년 12월 31일</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
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9호</u>
3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

4. • 5. (생략)

-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 치세를 면제한다.
 - 1. 2. (생략)
 - ① (생략)
-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 례) ① ~ ⑥ (생 략)
 - 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u>20</u> 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 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u>2021</u>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